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3드단18888(본소) 이혼
2013드단21723(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이AA

피고(반소원고) 윤BB

변 론 종 결 2015. 2. 10.

판 결 선 고 2015. 3. 10.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2.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9. 1.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2)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적이 있다.

3) 피고는 2010년경 술에 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올 자신에게 원고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끝내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2012년 4월경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 중이던

피고의 누나에게 원고가 위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아들의 식사를 제대로 준비해 주지 않은 적이 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고와 각방을 쓰기도 하였다.

5) 원고가 2012. 5. 28.경 집을 나감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6) 원고와 피고는 2012. 7. 19.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이혼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인 것을 인정한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로 된 부산 90바****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며 피고가 요청 시에는 이의 없이 이전해 주기로 하고 화물자동차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전 시까지 사용하는 것은 인정한다.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통장 및 현대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법률적 문제를 전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며 원고에게 일체 피해가 없도록 책임진다.

④ 삼성화재, 삼성생명 4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만기 시나 중도 해약 시는 피고가 수령하기로 한다.

⑤ 원고는 협의이혼 전이나 후에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7)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

여 18,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발생시켰고, 피고가 그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자,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화물차를 매매대금 19,500,000원에 매도하였다.

8) 원고는 2013. 8.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같은 해 9. 26.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2, 5, 6, 9, 10, 12, 14, 20,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이혼합의를 하였고 그 당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현재도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에게는 각방을 쓰고 선불리 집을 나오는 등의 잘못이 있으며, 피고에게도 사소한 일로도 이혼을 언급하는 등의 잘못이 있고, 쌍방이 모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의 경위

1) 피고는 원고와 동거를 시작한 때부터 2010. 2. 1.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그 이후부터 2010. 5. 24.까지는 주식회사 ◇◇정밀에서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를 주로 담당하면서도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부산 서구 충무대로***번길 *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별거를 시작한 무렵 이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3) 원고와 피고는 2010. 8. 2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신규 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현대캐피탈에게 채권가액 19,3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해주었다.

4) 피고는 2010년 8월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 사건 이혼합의 후 제대로 갚지 않자,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화물차를 매매대금 19,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5, 7, 8, 16, 17, 18,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

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

별지 '분할대상재산 명세표' 각 기재와 같다(각 예금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2012. 5. 28. 무렵 기준 금액이다).

다.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 채권은 5,000,000원이 남아 있고 15,000,000원은 반환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5,000,000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채권은 재산분할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을 이미 반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 명의의 채무를 별도로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반영하였고,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무렵 이후이며, 위 15,000,000원을 재산분할에 반영된 원고의 소극재산 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매도대금 및 위 화물차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재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이혼합의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이혼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물차가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인 2010. 8. 24.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쳤고, 위 대출 채무 중 일부는 혼인 중에 변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부산은행 가계우대정기적금 1,000,000원과 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예금 5,000,000원이 추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2012. 5. 11.과 같은 달 15. 각 출금되어 같은 달 15. 부산은행 메리트정기예금(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지속기간이 약 3년 6개월인 점, 원고가 가사를 주로 담당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한 점, 적극재산이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원고 명의의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대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이 아니라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보 당시 또는 해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 이 사건 화물차가 매도됨으로써 피고가 중요한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된 점, 분할대상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60%, 피고 40%로 각 정함

이 타당하다.

2)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와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재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7,800,000원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 17,813,666원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44,534,166원 $\times$ 40%, 원 미만은 버림]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①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17,8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곤